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46
----------	------

제안년월일: 2023년 9월 4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29호)과 서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50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전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와 시장의 지원 규정과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와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함.

나.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 신설(안 제9조).

바. 위해성·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한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규정(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하되, 이 중 마목은 제외한다.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7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탄소 (CO ₂ , ppm)	폼알데하이드 (HCHO,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 (CFU/ m^3)	일산화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0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마. 조리용 배기관